

배송/설치 계약서

“ 갑 ” (주) 이 엔 전 자

“ 을 ” (주) 제이(



㈜이엔전자 (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“갑”이라 한다)와 ㈜제이치디 (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0-13 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간에 “갑”의 제품 (TV 등)에 대한 배송/설치 관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한다.

= 아 래 =

제 1 조 【목 적】
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가전제품 배송/설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하고 “갑”은 “을”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

- ① 배송/설치라 함은 “갑”의 제품을 “을”이 인수하여 “갑”이 지정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/설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부대업무를 통칭한다.
- ② “고객”이라 함은 “갑”이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최종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3 조 【배송 및 설치】

“갑”이 의뢰하는 제품을 “을”은 해당 관리지역 내에 안전하고 성실하게 배송/설치할 의무가 있다. (단,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 지역 배송설치 불가)

제 4 조 【업무의 진행】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이 제공하는 기본 업무 및 부대 업무는 별첨 (배송/설치 업무 및 운송료 정산 기준)과 같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대 고객신뢰와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
제 5 조 【운송료 정산 및 지불】

- ① 운송료 단가는 별첨 (배송/설치 업무 및 운송료 정산 기준)에 의거하여 이행한다.
- ② “을”은 배송/설치 업무 수행 후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해당월의 배송내역과 관련된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“갑”에게 청구하고, “갑”은 이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을시 익월 20일까지 “을”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.

제 6 조 【책임한계】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제품을 인수받는 시점부터 배달/설치 및 부대업무를 완료 할 때

까지 책임을 지며, 제품의 인수 시점은 “을”의 배송/설치 물류센터의 입고기준으로 한다.

- ② “을”은 제품의 입고 및 배달/설치 중에 발생하는 사고(화재, 풍수해, 도난, 분실, 파손 등)방지에 최선을 다하며, 사고 발생시 “을”은 “갑”의 제품에 대해 제조원가로 보상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을”의 책임은 면책된다.
- ③ “갑”의 제품을 배송/설치시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배송/설치 기사 부주의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 손해분은 “을”이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.
- ④ “갑”이 의뢰한 배송/설치건은 “갑”의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“을”은 배송/설치 완료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.

제 7 조 【양도금지】

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단, “을”은 “갑”과의 상호협약에 의해 지역에 따라 타 협력업체에게 배송/설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 8 조 【계약의 해제/해지】

“갑”과 “을”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(15일)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- 1.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사용인이 배송/설치 업무를 태만이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원만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
- 2.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“을”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- 3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제 9 조 【비밀의 보장】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상대방의 물동정보 등의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3자 또는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할 수 없으며, 위반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.

제 10 조 【계약기간 및 효력이 발생】

본 계약기간은 1년(2018. 01. 15 ~ 2019. 01. 14)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1 조 【계약해석 및 관할법원】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택배표준약관, 상법 기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,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“갑”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 【기타사항】

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본 계약서 및 별첨된 배송/설치 업무 기준에 대한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우편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며,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의사표현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01월 15일

“갑”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

(주)이엔전

대표 박

“을” :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0-13

(주)제이

대표 김